



Ⅲ. 중 국

1. 진입장벽 특징 • 185
2. 도입취지 및 배경 • 185
3. 주요 진입장벽(유형별) • 186
4. 진입장벽 피해사례 • 196
5. 진입장벽별 파급효과 및 영향 • 197
6. 해소방안 및 향후전망 • 197
7. 기타 애로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 1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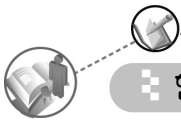
III

1. 진입장벽 특징

- 중국은 채유종실, 면화 등 일부 기초 농산물이나 가공농산물의 주된 수입국이기도 하지만 농산물 수출대국으로 농산물에 대한 진입장벽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음
- 인삼의 경우 자국 인삼산업 보호를 위해 복잡한 등록제도, 규제, 과도한 샘플링 등을 통해 한국 수출업체의 수출의욕 사전 차단
 - 수입약재관리방법, 수입보건품등록제도, 수입약재샘플검사규정
- 주류의 경우 자국 주류산업 보호를 위해 높은 관세로 자국 주류산업 보호, 가공식품의 경우 17% 수준인 높은 증치세(부가가치세) 유지

2. 도입취지 및 배경

- 수입약재관리방법
 - 수입약재의 품질을 확보한다는 취지이지만 까다로운 허가신청과 통관에 최소 3개월 이상 소요
- 수입보건품등록제도
 - 수입보건품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이지만 까다로운 등록절차, 과도한 등록 기간 및 비용 등을 통해 보건품의 수입을 억제하는 효과
- 수입약재샘플검사규정
 - 수입약재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이지만 과도한 샘플검사로 수입원가가 상승하여 자국산의 가격경쟁력 제고 효과



가. 진입장벽의 개념

- 진입장벽은 높은 관세 또는 관세 외의 각종 방법으로 해당국가의 대외 무역활동을 조절, 관리, 통제함으로써 수입을 제한하여 자국내시장과 산업을 보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관세를 통한 제한과 직접적 비관세 장벽과 간접적 비관세 장벽으로 구분
 - 직접적 비관세 장벽은 세관에서 수입상품의 수량, 품목을 직접 제한하며, 주요 조치로는 수입 제한제도, 수입 허가제도 등이 있음
 - 간접적 비관세 장벽은 수입상품에 엄격한 세관수속 또는 외화 관제 등을 적용하여 상품의 수입을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주요 조치로는 외화 관제, 수입화물에 대해 국내 세금을 징수, 정부조달 품목에 있어 외국산 제품을 배제, 복잡한 세관수속, 까다로운 위생안전 품질표준 및 포장 표준 적용 등이 있음

나. 일반적인 진입장벽의 유형

■ 통관부분의 장벽

- 수입국의 관련 부서가 수입업체가 통관수속을 밟을 때에 매우 복잡하거나 취득하기 어려운 서류, 심지어 영업비밀과 관련된 서류 제출을 요구함으로써 수입제품의 원가를 높여, 정상적인 수입에 영향을 줌
 - ➔ 계절성이 강한 수입제품(의류, 농산물 등)이 큰 영향을 받게 되며 통관 시 수입제품에 불합리한 세관 세금을 징수하여 수출에 장애가 되기도 함

■ 수입제품에 대해 차별적인 자국 내 세금을 징수

- 수입시장에 공급된 후에 유통분야에서 발생하는 자국 내 세금을 수입제품에 대해 징수



■ 수입 금지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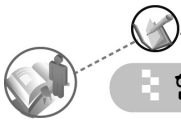
- 수입 금지령은 WTO 규정의 관련 예외 조례(예를 들면, GATT 제20조에서 규정한 일반 예외, 제21조에서 규정한 안전 예외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실시하는 수입 제한 또는 수입금지의 조치를 가리킴

■ 수입 허가

- 수입 허가는 자동 허가과 비자동 허가과로 나뉜다. 자동 허가는 심사비준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득할 수 있는 허가를 가리키며 비자동 허가는 반드시 심사비준의 절차를 거쳐야 취득할 수 있는 허가를 가리키며, 구체적으로 수량 제한의 허가(일반적으로 수입 할당관리)와 수량 제한이 없는 허가(일반적으로 단일 수입허가증 관리)로 나뉜다
 - 수입 할당관리에서 무역장벽은 주로 할당량의 불합리함, 할당 표준의 불합리함 또는 분배의 불공정으로 나타남. 단일 수입허가증 관리에서 무역장벽은 주로 관리절차의 불투명함, 복잡한 심사와 허가증 발급절차, 불필요한 서류 제출의 요구, 긴 심사시간 등이 있음

■ 기술 무역장벽

- WTO “기술 무역장벽 협의서”(TBT 협의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WTO 회원국은 국가 또는 지역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고 인류,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장하며, 환경을 보호하고, 사기행위를 방지하며, 수출제품의 품질 보증 등을 목적으로 기술법규, 표준 및 합격 평가절차를 제정하여 실시할 권한이 있는데 이를 TBT 조치라 부르며 기술법규, 표준과 합격 평가절차 등 3가지로 나뉜다
- 기술규범 : 기술규범은 강제 집행성 제품 특성 또는 관련 기술과 생산방법에 대한 규정과 제품, 기술 또는 생산방법에 적용하는 전문 용어, 부호, 포장, 마크 또는 라벨에 대한 규정 등으로 법률, 법규, 규정 또는 기타 규범 문건 등일 수 있다. 기술법규는 강제성 특징이 있어 기술법규의 요구를 만족하는 제품만을 판매하거나 수출입할 수 있음
- 표준 : 공인기구에서 비준한 비강제적으로 집행하여 사용되는 제품 또는 관련 기술과 생산방법의 규칙, 지침에 대한 것으로 이러한 표준은 제품, 기술 또는



생산방법에 적용하는 전문 용어, 부호, 포장, 마크 또는 라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일부 국가는 표준을 강제 표준과 추천 표준으로 나누며, 강제 표준은 기술법규의 성격이 있음. 현재 일부 국가, 특히 일부 선진국은 경제와 기술적의 우위를 이용하여, 이와 같은 기술 표준을 무역장벽을 구축하여, 기타 무역 대상국, 특히 개발도상국의 제품수입을 제한

- 합격 평가절차 : 합격 평가절차는 직간접적으로 기술법규 또는 표준의 관련 요구를 만족시키는가를 확정하는 절차를 가리킨다. “TBT 협의서”에서 규정한 합격 평가절차는 샘플링, 측정과 검험 절차, 부합 여부의 평가, 검증과 합격 보증 절차, 등록, 인가와 비준을 포함하며 불투명하거나 평가절차의 차별 등이 제품 수입시에 장애로 작용

■ 위생 및 검역조치

- WTO “SPS 협의서” 관련규정에 따라 WTO 회원국은 아래와 같은 조치로 인류,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권한 부여
 - WTO 회원국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이 병해충 또는 질병, 병균을 보유하고 있는 유기체, 병균 유기체의 침입, 번식 또는 전파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서 방지
 - WTO 회원국 영토 내의 인체, 동물의 생명 및 건강이 식품, 음료 또는 사료 중의 첨가제, 오염물, 독소, 병균 유기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
 - WTO 회원국 영토 내의 인체 생명 또는 건강이 동물, 식물 또는 동식물 제품이 보유한 병충해의 침입, 번식 또는 전파로 위협해지는 것을 방지
 - WTO 회원국 영토 내의 유해 생물의 침입, 번식 또는 전파로 발생하는 기타 손실에 대한 방지 및 통제
- SPS 조치는 관련 법률, 법령, 법규, 요구와 절차, 특히 최종 제품의 표준, 기술과 생산방법, 검험, 검역, 검사, 증서 발급과 비준절차, 각종 검역처리, 동물 또는 식물 운송과 관련되거나 운송과정에서 동식물 생존 유지에 필요한 물질과 관련된 사항, 관련 통계 방법, 샘플링 절차와 위험 평가방법의 규정, 식품 안전과 직접 연관되는 포장과 라벨의 요구 등에서 비관세 장벽을 구성할 수 있음



■ 무역구제조치

- 무역구제조치는 수입제품에 대한 반덤핑, 반보조와 보장조치를 말함. 불합리하게 이와 같은 무역구제조치를 과도하게 시행하게 될 경우 수입제품에 대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게 됨

■ 정부조달 부문에 있어 수입제품에 대한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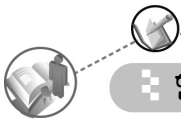
- 정부조달 부문에서 발생하는 수입제품에 대한 차별은 두 가지
 - WTO 《정부구매 협의서》를 체결한 국가 사이에 시행하고 있는 수입제품에 대한 차별조치 : 《정부구매 협의서》를 체결한 국가는 반드시 정부조달 부문에 있어 투명성을 유지하여 기타 회원국이 정부조달에 참여할 경우, 자국산 제품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함. 하지만 일부 WTO 회원국의 경우 정부조달 부문에 있어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구매절차를 시행하여 수입제품이 공정하게 정부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
 - WTO 《정부구매 협의서》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 사이에 시행하는 수입제품에 대한 차별조치 : 주로 최혜국 대우를 위반하여 타 국가 제품에 대해 차별 대우를 함으로써 특정 국가 제품의 정부조달 부문 진입을 방해

■ 서비스 무역장벽

- 국외 서비스와 서비스 제공업체가 해외시장 진출 시에는 아래와 같은 서비스 장벽 발생
 - 서비스 산업 진출조건이 과도하게 엄격하거나, 투명성이 부족
 - 복잡한 심사와 비준절차
 - 해외 서비스 업체에 각종 제한을 적용, 불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 무역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조치

- 일부 WTO 회원국은 무역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조치가 《TRIPs 협정서》에 부합되지 않으며, 이와 같은 무역장벽은 아래와 같다.
 - 《TRIPs 협정서》에서 보호를 요구하는 지적재산권에 대해 법률 규정이 미비하거나, 법률 규정이 《TRIPs 협정서》의 내용을 위반
 -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집행절차가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소요



- 지적재산권의 법적 구제조치가 미약하거나, 소송자의 재심사 청구권을 박탈하여 지적재산권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확보할 수 없음

다. 중국의 비관세 조치

중국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 조치로는 주로 수입 허가증, 수입 할당, 수입 등록 입찰, 수입상품 검험, 동식물 검역, 식품 위생과 의약 검험, 금융 외화 관리와 시장진출 제한 등이 있음

■ 할당 관리

- HS분류로 협정서 첨부 3에 포함된 제품은 과도단계 할당 관리를 실행하는 제품이며 그 외의 제품에 대해서는 모두 “WTO 협정”에 합당
- 관세 할당 관리
 - 1996년 중국은 최초로 관세 할당 관리하는 수입제품 리스트, 수입제품의 할당 세율을 발표
 - 중국은 WTO에 가입 후 보리, 콩, 유채씨, 팥콩유, 채유, 옥수수 기름 등 제품의 관세 할당을 취소하고 단일 관세를 시행하고 그 외 관세 할당으로 설탕, 목화, 3가지 화학비료에 대한 수입량 제한을 대체
- 허가제도
 - 1984년, 중국은 “수입 화물 허가제도 임시 시행조례” 및 그 실시세칙을 발표하였으며 현재 중국이 수입 허가증 제도를 실시하는 제품은 35개 부류, 386개 세칙번호이며, 일반 제품의 수입 할당 관리는 주로 원유, 설탕, 담배 등 26개 분류, 96개 세칙번호로 일부 제품은 명확한 수량 제한이 없지만 할당과 비 할당 수입의 관세 차이가 커서 실제로는 할당 관리 효과가 있음
 - 중국이 특정 제품의 등록수입을 실행하는 것은 주로 식량, 식물유, 원유, 합성고무, 금속재료 등 14개 분류, 486개 세칙번호의 제품

■ 원산지 규칙

- 중국은 WTO 가입 후 원산지 규칙과 관련된 법률, 법규, 기타 조치를 WTO “원산지 규칙 협정”과 “원산지 규칙 협정”에 부합되도록 시행



■ 관세 가격평가

- 중국은 과거 최저 가격제한 또는 참고가격으로 과세가격을 확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으나 WTO 가입 후 “세관 가격 평가협정”을 실시하고 WTO 세관 가격 평가 위원회에서 통과한 “수입화물 과세가격에서 이자비용 처리에 관한 결정”과 “기록 데이터 처리 설비용 소프트웨어의 매개에 대해 가격 평가를 진행하는 데에 관한 결정”(G/VAL/5)의 규정을 실시하고 있음

■ 기술성 무역장벽

- 중국은 WTO 가입 후 “TBT 협정”과 TBT 위원회에서 통과한 관련 결정과 건의에 의해 기술규범, 표준, 합격 평가절차에 의견을 제출하는 최저 기한을 허용하고 있음
- “SPS 협정”의 규정에 따라 중국의 대부분 SPS 조치는 국제표준, 지침과 건의에 기반하며 1개 SPS 통보기구와 1개 자문기구를 설립

■ 검험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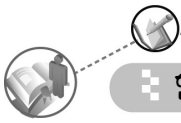
- 중국 상품검사부서는 “상품검사기구에서 검험을 실시하는 수입상품 품목 종류”를 제정, 조절, 발표했으며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 “식품 위생법”, “약품 관리법”에 의해 수입하는 동식물 및 식품과 약품에 대해 동식물 검역과 수입 식품 위생, 의약 검험을 진행
 - ➔ 각종 검험검역은 모두 검험검역수속, 검사신청 수입업체 자격 제한, 검험비용의 수취, 표준과 요구의 향상 등을 통해 수량 제한과 가격 제한의 역할을 하기도 함

■ 반덤핑세와 반보조세

- 중국은 1997년 반덤핑과 반보조 조례와 절차를 발표하였으며 WTO 가입 전에는 중국이 “반덤핑 협정”과 “SCM 협정”에서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중국 현행 법규와 절차를 수정한다고 약속하였으나 아직 중국의 대외 반덤핑은 많은 문제점이 있음
 - 반덤핑 업종이 집중되어 있고, 반덤핑 세율이 비교적 낮으며, 반덤핑 조치와 외자정책이 서로 충돌

■ 보장조치

- 중국은 WTO 가입 후 “보장 조치 조례”를 시행, 이 조례의 내용은 “보장 조치 협정”과 일치하며 현재 중국은 “대외무역법” 제29조와 “보장 조치 조례”에 의해



보장조치와 관련된 법규를 제정

■ 지적재산권 보호

- 중국은 WTO 가입 후 “TRIPS 협정”을 지키기 위해, “특허법”을 수정했으며, “저작권법”, “상표법” 및 “TRIPS 협정”과 관련된 실시세칙의 수정 진행하였음. 현재 국가지적재산권국(SIPO)은 특허 기준을 책임지고, 국가공상행정관리국(SAIC) 산하의 상표국은 상표 등록을 책임지고 있음. 또한 판권국은 판권 정책의 제정을 책임지고,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은 상업기밀 보호를 포함한 부정당 경쟁방지를 책임지며, 국가약품감독관리국(SDA)은 약품 보호를, 농업부와 국가임업국은 식물 신규 품목의 보호,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과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은 불법복제 제품의 단속을 책임지고 있음
- ☞ 불법복제 유통에 대한 중국 당국의 단속과 통제는 미약한 실정

■ 국내 세금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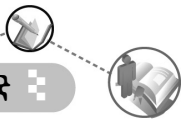
- WTO 가입 후 중국은 수입제품에 대해 징수하는 국내 세금과 관련된 법률, 법규, 기타 조치는 WTO에 부합되도록 수정하고 수입제품에 대해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소비세는 세관총서에서 징수하며 관련 세금의 징수, 세율의 조절, 감면정책은 국무원에서 결정하고 법률, 법규의 해석과 집행은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에서 담당

■ 외환 통제

- 외화 사용의 통제와 관리, 수입상품의 담보, 담보금 제도 등의 금융 제한 역시 중요한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현재 중국은 경상항목에 자유로운 외화 교환을 시행하고 있지만 기타 금융조치를 이용하여 무역제한 조치를 시행하기도 함

■ 시장진출 제한

- 시장진출 제한은 중국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비관세 조치로서 서비스 분야의 경우 관세를 이용한 보호가 불가능하므로 주로 서비스 분야에 많이 사용되며 자국에서 경영하는 금융, 보험, 상업, 무역, 교육 등 서비스 분야를 상대로 외국계 회사의 진출을 비교적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 ☞ 이러한 시장진출의 제한은 강력한 비관세 조치 수단으로서, 무역자유화정신에 위배되어 상대국의 압력을 많이 받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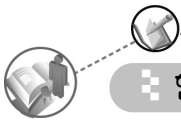


라. 중국의 대표적인 농산물 비관세 장벽 사례

■ 사례 1: 유럽 감자 전분(Potato Starch)에 대한 반덤핑 조치

“반덤핑조례”의 규정에 따라 중국 상무부는 2006년 2월 6일에 입안 공고를 발표하여 원산지가 유럽인 수입 감자 전분(조사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진행한다고 결정하고 반덤핑 조사결과와 “반덤핑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2006년 8월 18일에 1차 중재 공고를 발표하여, 조사제품에 덤핑이 존재, 중국 감자 전분 산업이 실질적으로 큰 손실을 입었다고 판단하고 1차 중재 후에 덤핑 규모, 손실 규모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시행하였음. 최종 조사결과 “반덤핑조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상무부는 최종 중재를 내렸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반덤핑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2007년 2월 6일부터 5년 동안 조사 제품(세칙번호 : 11081300)에 대해 반덤핑 세금을 부과한다고 결정
 - 반덤핑 세율 : 네덜란드 AVEBE U.A.(18%), 독일 Avebe Kartoffel-starkefabrik Prignitz/Wendland GmbH(18%), 프랑스 ROQUETTE FRERES(17%), 기타 유럽 회사(35%)
- 2007년 2월 6일부터 수입업체는 조사제품을 수입할 시에는 반드시 중국 세관에 반덤핑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반덤핑 세금은 세관에서 확인한 세후가격으로 세금을 계산
 - 계산식 : 반덤핑 세금 = 세관에서 확인한 세후가격 × 반덤핑 세율
 - 수입부분의 부가가치세는 세관에서 확인한 세후가격에 관세와 반덤핑 세금을 합쳐서 세금을 계산
- 2006년 8월 18일부터 공고일까지 관련 수입업체는 1차 중재 결정에 따라 중국 세관에 보증금을 지불하고 최종 중재에서 확인한 반덤핑 세금의 상품 범위와 반덤핑 세율에 따라 반덤핑 세금으로 전환되며, 이에 상응하는 부가가치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징수



■ 사례 2 : 일본, 한국의 뉴클레오티드(nucleotide) 식품 첨가제에 대한 반덤핑 조치

2004년 11월 12일, 상무부는 “반덤핑조례”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가 일본, 한국인 수입 뉴클레오티드 식품 첨가제(조사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하고 조사결과와 “반덤핑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2005년 8월 4일에 1차 중재 공고를 발표하여, 조사제품에 덤핑이 존재하여 중국 관련 산업이 실질적 손실을 받았으며, 이에 덤핑과 실질적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1차 중재 후에 상무부는 덤핑 규모와 손실 규모에 대해 추가조사를 실시

- “반덤핑조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2006년 5월 12일부터 5년 동안 조사제품에 대해 반덤핑 세금부과 결정
 - 반덤핑 세율 : 모든 일본회사(119%), 한국 Daesang Corporation(25%), 기타 한국회사(119%)
- 2006년 5월 12일부터 수입업체는 조사제품을 수입할 때에 반드시 중국 세관에 반덤핑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반덤핑 세금은 세관에서 확인한 세후가격으로 세금을 계산
 - 계산식 : 반덤핑 세금 = 세관에서 확인한 세후가격 × 반덤핑 세율
 - 수입부분의 부가가치세는 세관에서 확인한 세후가격에 관세와 반덤핑 세금을 합쳐서 세금을 계산
- 2005년 8월 4일부터 공고일까지 관련 수입업체는 1차 중재 결정에 의해 중국 세관에 보증금을 지불하고, 최종 중재에서 확정된 반덤핑 세금의 상품 범위와 반덤핑 세율에 따라 반덤핑 세금으로 전환되며, 이에 상응하는 부가가치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징수

마. 한국상품 진입장벽

〈홍삼〉

- 진입장벽 유형 : 사전 수입 허가제도, 등록제도
- 관련 법령
 - 수입약재관리방법 : 홍삼
 - 수입약재샘플검사규정 : 홍삼
 - 수입보건품등록제도 : 홍삼제품



○ 진입장벽이 되는 주요 내용

- 수입약재에 대해 사전에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입허가증도 최대 2년으로 2년 후 다시 신청
- 수입약재샘플검사규정에 의해 홍삼 샘플링 검사는 상품등급별(천,지,양), 중량별 샘플링을 해야 하며 검역비용도 품목당 RMB 7,000 소요

〈삼계탕〉

○ 진입장벽 유형 : 검역규정, 보건식품등록규정

○ 관련 법령

- 검역관련 : 농업부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공고 제323호(붙임 1)
- 보건식품 등록관련 : 보건식품 원료관리에 관한 규범 통지(2002) 51호(붙임 2)

○ 진입장벽이 되는 주요 내용

- 한국의 조류독감 발생(2003년) 이후 중국 농업부는 한국의 가금육 및 그 가공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
- 삼계탕에 들어가는 인삼은 중국의 “보건식품 원료관리에 관한 규범”에 의해 보건식품으로 사용 가능한 품목에 포함되어 있어 반드시 보건식품으로 등록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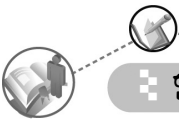
〈김 치〉

○ 진입장벽의 유형 : 중국 내 규정 미비

○ 관련규정 : 중국 절임류 품질표준

○ 진입장벽이 되는 주된 요인

- 김치는 발효식품으로서 발효과정 속에서 대장균 등 잡균이 줄어들고 유산균이 늘어나는 특성이 있어 이러한 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검역이 이뤄져야 하나 중국에는 김치가 별도의 제품군이 아닌 절임류로 분류(GB2714-2003/장절임류위생표준)되어 검역을 받고 있으며 절임류의 경우 미생물 기준치(대장균군)가 100g 당 30마리 이내(별크포장의 경우 90마리 이내)로 발효식품인 김치의 특성상 엄격한 적용 시 통관이 거의 불가능함



4. 진입장벽 피해사례

<홍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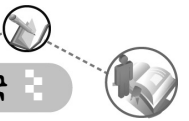
- 대부분의 홍삼 및 홍삼제품 수출업체들이 복잡한 등록절차, 과다한 시간과 비용 등으로 중국시장진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
 - 보건식품 등록을 하지 않고 기타가공식품으로 수출하여 유통되는 홍삼 및 인삼 제품의 경우 관련 법 조항에 의해 언제든지 제재를 받을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인삼공사, 보령 등 일부 규모가 큰 회사도 비용과다로 일부 주력 제품만 보건식품을 등록한 상황
- 인삼공사의 경우 홍삼(뿌리삼) 수출 시 마다 과다한 샘플비용 지출

<삼계탕>

- 한국이 조류독감 발병국가라는 이유로 열처리 가공식품까지 수입을 금지하고 있어 삼계탕 수출업체들의 중국시장 진출이 거의 원천적으로 막혀 있음
- 검역문제가 해소 되더라도 인삼은 중국의 “보건식품 원료관리에 관한 규범”에 의해 보건식품으로 사용 가능한 품목에 포함되어 있어 반드시 보건식품으로 등록하여야 하므로 수출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기간 소요
 - ※ 중국에서 닭도리탕을 생산하고 있는 CJ 중국현지법인에 따르면 인삼이 들어가는 삼계탕은 보건식품으로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생산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함

<김치>

- 중국은 김치시장이 막 형성된 시기로 아직 수입 김치시장은 형성되어 있지 않으나 일부 고급시장을 개척하려는 한국 수출업체의 경우 세관에서 엄격한 검역규정을 들어 수출이 어려운 상황
 - 판촉행사, 홍보행사를 위해 일부 소량 수출된 김치의 경우 일반가공식품으로 편법 통관하여 수출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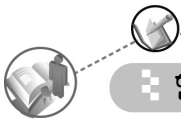


5. 진입장벽별 파급효과 및 영향

- 중국 내에서도 한국 홍삼은 명성이 있어 명절선물 등으로 잠재적인 수요가 매우 크나 수출을 위한 기회비용(등록기간, 비용 등)이 과다하여 적극적인 시장개척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판매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중국소비자들도 한국 홍삼 및 홍삼 제품을 접하기 쉽지 않음
- 삼계탕은 이미 대만이나 홍콩 등지에 상당량이 수출될 정도로 중화권에 인기가 있고 중국의 계속된 경제성장을 감안할 경우 수출 전망은 비교적 밝으나 현재는 원천적으로 수출이 막혀있음
- 김치는 중국 내 시장형성 초기로 지속된 소비수준 향상과 웰빙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향후 중국 내에도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수입김치시장 형성이 가능하나 현재 규정을 적용할 경우 검역통과가 원천적으로 어려움

6. 해소방안 및 향후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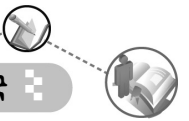
- 한국의 입장에서 수입약재관리방법 등 각종 관련제도는 진입장벽으로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제도가 인삼이나 홍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다양한 약재에 공히 적용되고 있어 이를 진입장벽으로 규정하여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중국의 반감을 일으킬 가능성 있음
- “보건식품 원료관리에 관한 규범”에서 “보건식품으로 사용 가능한 품목”에 속해 있는 인삼을 식습관이나 음식종류 등을 예로 들거나 인삼의 함량 등을 조건으로 “식품으로 사용 가능한 품목”으로 변경 요구
 - 중국에서도 인삼(건삼) 등 다양한 약제가 포함된 보양용 탕(육수)재료가 보건식품 등록 없이 대형유통매장에 많이 유통되고 있는 점을 미뤄 식품으로 사용 가능한 품목으로 변경 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삼계탕, 홍삼·인삼 가공제품(차류 등)의 경우 보건식품 등록절차 없이 수출 가능
- 수입약재샘플검사규정에서 상품등급별, 포장단위별(무게)로 샘플링을 하는 것과 샘플링을 위한 과도한 시료 채취 등에 대해서는 한국 내 유관기관과 수출업체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적정하게 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김치에 대해서는 향후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수입김치시장 형성에 대비하여 발효식품의 특성을 인정한 별도규정 신설 또는 한국의 중국김치 수입 시 실시하는 검역에 준하여 검역진행을 요청
- 현재 한국이나 일본은 김치 수입 시 발효식품의 특성을 인정하여 검역기준이 까다롭지 않으며 이를 중국정부가 수입통관 시에도 적용토록 요청

7 기타 애로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 유자차 통관 시 과도한 통관비용으로 Backship된 사례
 - 유자차의 제반 통관비(100만원 이내/컨테이너)는 얼마 되지 않으며 수출업체가 밝힌 과도한 통관비용은 관세(20%)와 증치세(17%)로 판단
- 유자차, 전통주 등 수출업체 대부분이 다소 높은 관세와 증치세에 대해 진입장벽으로 여기고 있음



[참고] 농산물 수입관련 제도 등 기타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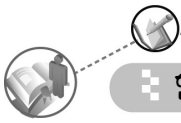
■ 수입 금지화물

- 2004년에 수정한 “대외무역법” 제16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화물은 중국 내 수입을 금지
 - 국가 안전, 사회 공익 또는 공공 도덕을 위해 수입을 금지하는 화물
 - 인체의 건강, 동식물 생명보호, 환경보호를 위해 수입을 금지하는 화물
 - 금, 백은 수출입과 관련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수입을 금지하는 화물
 - 중국이 체결 가입한 국제조약, 협정의 규정에 따라 수입을 금지하는 화물
 -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수입을 금지하는 화물

■ 수입 금지화물 리스트

순서	문서번호	주요 화물
1회	대외경제무역부 공고 2001년 제19호	호랑이 뼈, 무소 뿔, 아편 즙과 엑기스 등
2회	대외경제무역부, 세관총서, 국가품질 감독검험검역총국 공고 2001년 제37호	압력 용기, 의료기기, 전자 게임기 등 67개 중고 기계, 전기제품
3회	대외경제무역부, 세관총서, 국가환경 보호총국 공고 2001년 제36호	의료 폐기물, 화학공업 폐기물 등 유해 폐기물
4회	대외경제무역부, 세관총서, 국가환경 보호총국 공고 2001년 제25호	미가공 모발, 광채 및 유사 공업 광채, 폐기 타이어와 그 조각, 헌 옷 등
5회	대외경제무역부, 세관총서, 국가환경 보호총국 공고 2002년 제25호	폐기 기계, 전기제품
6회	상무부, 세관총서, 국가환경보호총국 공고 2005년 제116호	화학약품, 농약 등

자료출처 : 상무부(www.mofcom.gov.cn)



■ 수입 제한화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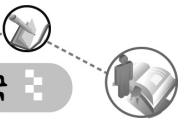
- 2004년에 수정한 “대외무역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경우에 관련 화물의 수입을 제한
 - 국가 안전, 사회 공익 또는 공공 도덕을 위해 수입을 금지하는 화물
 - 인체의 건강, 동식물 생명보호, 환경보호를 위해 수입을 금지하는 화물
 - 금, 백은 수출입과 관련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수입을 금지하는 화물
 - 중국이 체결 가입한 국제조약, 협정의 규정에 따라 수입을 금지하는 화물
 - 국가의 국제 금융지위와 국제 수지의 균형을 위해 수입을 제한하는 화물
 - 어떠한 형식의 농업, 목축업, 어업제품에 대해 수입을 제한하는 화물
 - 국내 특정 산업의 건설 또는 가속화를 위해 수입을 제한하는 화물
 -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수입을 제한하는 화물

■ 임시 제한 및 금지조치

- 국제 수지가 심각하게 균형을 잃었거나 심각한 균형 상실 위협이 있을 경우 국제 수지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또는 경제 발전계획의 실시에 대응되는 외화 비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입 화물의 가치 또는 수량에 임시 제한조치를 채택
- 국내 특정 산업을 건설 또는 가속화하기 위하여 기존 조치로 달성하지 못할 경우, 수입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임시조치를 채택
- 국가에서 아래 한 가지 또는 몇 가지 조치를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 시 농산물,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제한하는 임시 조치를 채택
 - 같은 제품 또는 직접 경쟁 제품의 국내 생산 또는 판매에 대해 제한조치를 채택할 경우
 - 소비 보조형식을 통하여 국내 과잉상태의 같은 제품 또는 직접 경쟁 제품을 제거할 경우
 - 주로 수입 농산물, 수산물로 형성한 동물제품에 대해 생산제한조치를 채택할 경우

■ 수입 할당제도

- “대외무역법”과 “화물 수출입 관리조례”에 의해 중국은 수량 제한 수입화물에 대해서 수입 할당관리를 실행하며 이는 국무원 상무부와 관련 부서가 국무원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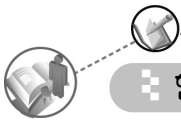


규정한 범위 내에서 관리

- 중국의 수입 할당관리는 기계, 전기제품의 수입 할당, 중요 공업제품의 수입 할당, 관세 할당(TRQ)과 기타 수입 할당 등이 있음
- 주관부서는 매년 7월 31일 이전에 다음 연도의 수입 할당량을 발표하고, 수입 할당 신청인은 매년 8월 1일~8월 31일에 주관부서에 다음 연도의 수입 할당 신청을 제출한다. 이후 주관부서는 매년 10월 31일 이전에 다음 연도의 할당량을 분배하고 수요에 따라 할당량을 조절할 수 있으며, 할당과 관련된 변동사항은 실행일 21일 이전에 공고하고 주관부서는 규정한 신청 마감일로부터 60일 내에 할당 발급 여부를 결정
- 절차를 거쳐 수입할당을 받은 수입업체는 수입 할당 관리부서의 할당증명을 세관에 제출하여 통관 신청수속을 진행하며 수입할당을 받은 업체가 할당량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그해 9월 1일 이전에 사용하지 못한 할당량을 주관부서에 반환해야 하며,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고 그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주관부서는 다음 연도에 이에 상응하는 할당량을 해당업체로부터 공제

■ 관세 할당(TRQ) 관리

- 수입 관세 할당(TRQ)을 시행하는 제품은 일반적으로 할당 내의 세율과 할당 외의 세율이 있어 관세 할당 내에 수입하는 화물은 할당 내의 세율에 따라 관세를 납부하고 할당 외에 수입하는 화물은 할당 외의 세율에 따라 관세를 납부
- 주관부서(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매년 9월 15일~10월 14일에 다음 연도의 관세 할당을 발표하고 신청인은 10월 15일~11월 30일에 주관부서에 관세 할당 신청을 제출하며 주관부서는 매년 12월 31일 전에 다음 연도의 할당을 분배
- 수입업체는 주관부서의 관세 할당증명을 세관에 제출하여 통관 신청수속을 진행하며 관세 할당 소유자가 할당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그해 9월 1일 전에 사용하지 못한 할당을 주관부서에 반환해야 하며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고 그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주관부서는 다음 연도에 이에 상응하는 할당량을 수입업체로부터 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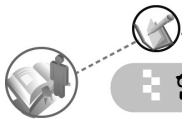


- 상무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03년 9월 27일에 “대외무역법”과 “화물 수출입 관리조례”에 의해, “농산물 수입 관세 할당관리 임시 시행방법”을 제정하여 밀, 옥수수, 쌀, 두유, 채유, 감람유, 설탕, 목화, 양모 및 섬수모에 대해 수입 관세 할당관리를 실행
 - 그 중 밀, 옥수수, 쌀, 두유, 채유, 감람유, 설탕, 목화의 수입 관세는 국영무역 할당과 비국영역 할당으로 나누며, 섬수모의 수입은 회사를 지정하여 실행하며 밀, 옥수수, 쌀, 목화의 수입 관세 할당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분배하고 두유, 설탕, 감람유, 설탕, 양모, 섬수모의 수입 관세 할당을 상무부에서 분배
 - “농산물 수입 관세 할당증”은 일반 무역, 가공 무역, 화물교환 무역, 변경지역 소액무역, 원조, 증정 등 무역방식의 수입에 적용하며 보세창고, 보세구, 수출 가공구에서 수입하는 제품은 “농산물 수입 관세 할당증”을 면제한다.
 -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각각 매년 1월 1일 전에 최종 고객에게 “농산물 수입 관세 할당증”을 발급하며, “상무부 농산물 수입 관세 할당증 전용도장”,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농산물 수입 관세 할당증 전용도장”을 날인하며 국영무역 할당은 “농산물 수입 관세 할당증”에 표기한다.
 - 수입 관세 할당은 매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당해년도 이내에 유효하며 “농산물 수입 관세 할당증”은 매년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계약에 의해 선후 순서방식을 실행한 “농산물 수입 관세 할당증”의 유효기한은 발표한 시행세칙에 의해 실행한다. 그해 12월 31일 전에 수출항에서 출발하여 다음 연도에 화물이 도착하는 수입 관세 할당 농산물은 최종 고객이 12월 31일 전에 “농산물 수입 관세 할당증” 과 관련 증명서류를 증서 발급기관에 제출하여 연장 신청을 하며, 증서 발급기관은 사실 여부를 심사한 후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 기한은 다음 연도 2월 1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 2008년 농산물 수입 관세 할당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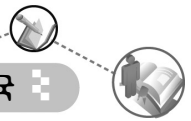
품목	수입관세 할당량	국영무역 비중	수입 관세 할당 신청자격
설탕	194.5만 톤	70%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영무역업체 2. 국가적 비축기능이 있는 중앙기업 3. 2007년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 4. 일평균 가공량≥600톤, 등록자본금≥1,000만 위안, 연간 매출액≥2억 위안인 제당업체 5. 설탕을 원료로 하는 가공무역업체
목화	89.4만 톤	33%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영무역업체 2. 2007년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 3. 방적설비≥5만 방추(spindle)인 생산업체
옥수수	720만 톤	60%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영무역업체 2. 국가적 비축기능이 있는 중앙기업 3. 2007년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 4. 옥수수를 원료로 하는 연평균 옥수수 수요량≥5만 톤인 배합사료 생산업체 5. 옥수수를 원료로 하는 연평균 옥수수 수요량≥10만 톤인 기타 생산업체 6. 2007년에 수입실적이 없지만 수출입 경영권이 있고 지방 상무부서의 가공무역 생산능력 증명이 있으며, 옥수수를 원료로 하는 가공무역업체
쌀	532만 톤	50%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영무역업체 2. 국가 비축기능이 있는 중앙기업 3. 2007년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 4. 식량 도소매자격이 있고 연간 매출액≥1억 위안인 식량업체 5. 연간 식량 수출입액≥2,500만 달러인 무역업체 6. 2007년에 수입실적이 없지만 수출입 경영권이 있고 지방 상무부서의 가공무역 생산능력의 증명이 있으며, 쌀을 원료로 하는 가공무역업체
밀	963.6만 톤	90%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영무역업체 2. 국가 비축기능이 있는 중앙기업 3. 2007년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 4. 일평균 가공량≥400톤 5. 2007년에 수입실적이 없지만 수출입 경영권이 있고 지방 상무부서의 가공무역 생산능력의 증명이 있으며, 밀을 원료로 하는 가공무역업체

자료출처 : 상무부(www.mofcom.gov.cn)



■ 2008년 수입 관세 할당 상품 관세율(%)

구분	화물명칭	세칙번호	할당 외 세율		할당 내 세율
			최혜국 세율	일반세율	
1	밀 wheat	10011000	65	180	1
		10019010	65	180	1
		10019090	65	180	1
		11010000	65	135	6
		11031100	65	135	9
		11032010	65	180	10
2	옥수수 Maize(Corn)	10051000	20	180	1
		10059000	65	180	1
		11022000	40	130	9
		11031300	65	130	9
		11042300	65	180	10
3	벼와 쌀 Rice, whether or not husked	10061011	65	180	1
		10061019	65	180	1
		10061091	65	180	1
		10061099	65	180	1
		10062010	65	180	1
		10062090	65	180	1
		10063010	65	180	1
		10063090	65	180	1
		10064010	65	180	1
		10064090	65	180	1
		11029011	40	130	9
		11029019	40	130	9
		11031921	10	70	9
		11031921	10	70	9
4	설탕 sugar	17011100	50	125	15
		17011200	50	125	15
		17019100	50	125	15
		17019910	50	125	15
		17019920	50	125	15
		17019990	50	125	15



구분	화물명칭	세척번호	할당 외 세율		할당 내 세율
			최혜국 세율	일반세율	
5	양모 wool	51011100	38	50	1
		51011900	38	50	1
		51012100	38	50	1
		51012900	38	50	1
		51013000	38	50	1
		51031010	38	50	1
6	섬수모 Wool tops	51051000	38	50	3
		51052100	38	50	3
		51052900	38	50	3
7	면화 Cotton	52101000	40[비고1]	125	1
		52030000	40	125	1
8	화학비료 Chemical fertilizer	31021000	50	150	4[비고2]
		31052000	50	150	4[비고3]
		31053000	50	150	4[비고4]

자료출처 : 세관총서

[비고 1] : 할당 외 수입의 일정수량의 면화에 대해서는, 슬라이딩 관세(滑準稅, sliding scale duty)형식의 임시 관세를 적용한다. 구체적 방식은 아래와 같다.

- 수입 면화의 과세가격 ≥ 11.397 위안/kg일 경우, 0.570위안/kg으로 종량세를 징수
 - 수입 면화의 과세가격 < 11.397 위안/kg일 경우, 임시 관세 세율은 아래와 같이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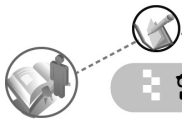
$$R_i = 8.686/P_i + 2.526\% \cdot P_i$$

* R_i : 임시 관세 세율, R_i 가 40%보다 높은 경우 40%로 한다. P_i : 관세 과세 가격이며 단위는 위안/kg이다.

[비고 2, 3, 4] : 임시 세율은 1%

■ 농약 최고 잔류량 제한표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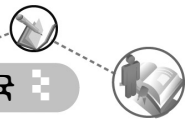
- 2005년 중국은 136개 농약, 479가지 최고 잔류량 제한의 국가표준, 31가지 최고 잔류량 제한의 업종표준을 발표하였으며 최근 몇 년간, 농업, 품질검사, 위생 등의 부서는 400여 가지 농약, 약 60가지 식품, 농산물 농약 잔류량 검측분석방법의 국가표준과 업종표준을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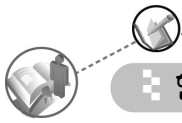
■ 중국 주요 농약 최고 잔류량 제한표준

No.	농약 명칭	농산물/식품	제한 잔류량(mg/kg)	표준번호
1	2, 4-D	채소	0.2	GB15194-94
		피곡	0.5	GB15194-94
2	chlormequatchloride	피곡	5	GB15194-94
3	paraquat	유채유	0.05	GB16333-1996
		알곡	0.5	GB16333-1996
		감귤	0.3	GB16333-1996
4	chlorothalonil	곡류(알곡기준)	0.2	GB14869-94
		채소	1	GB14869-94
		과일	1	GB14869-94
5	fenthion	곡류(알곡기준)	0.05	GB4788-94
		식용유	0.01	GB4788-94
		채소	0.05	GB4788-94
		과일	0.05	GB4788-94
6	fenbutatinoxide	감귤	5	GB16333-1996
		배 등	5	GB16333-1996
7	ethoprophos	땅콩	0.02	GB15194-94
8	propiconazole	피곡	0.1	GB15194-94
9	glyphosate	사탕수수	2	GB14968-94
		과일	0.1	GB14968-94
10	diflubenzuron	감귤	1	GB16333-1996
		배 등	1	GB16333-1996
		피곡	0.2	GB16333-1996
No.	농약 명칭	농산물/식품	제한 잔류량(mg/kg)	표준번호
11	mancozeb	배 등	3	GB16333-1996
		소립과일*	5	GB16333-1996
		과일채소	0.5	GB16333-1996
12	phenthoate	알곡	0.05	GB16333-1996
		감귤	1	GB16333-1996
13	DDT	식량(알곡)	0.2	GB2763-81
		채소	0.1	GB2763-81
		과일	0.1	GB2763-81
		어류	1	GB2763-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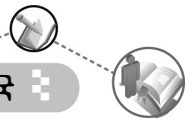
*주) 소립(小粒)과일 : 포도 등 과실 크기가 작은 과일 통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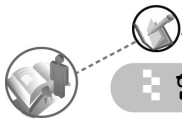
No.	농약 명칭	농산물/식품	제한 잔류량(mg/kg)	표준번호
14	thichlorfon	채소 과일 피곡	0.1 0.1 0.1	GB16333-1996 GB16333-1996 GB16333-1996
15	divhlorvos	식용유 채소 과일 피곡	검출금지 0.2 0.2 0.1	GB5127-1998 GB5127-1998 GB5127-1998 GB5127-1998
16	anilazine	채소 피곡	10 0.2	GB15194-94 GB15194-94
17	edifenphos	알곡	0.1	GB16333-1996
18	carbosulfan	벼 감귤	0.5 2	GB16333-1996 GB16333-1996
19	chlorpyrifos	알곡 배 등 면실유 엽채	0.1 1 0.05 1	GB16333-1996 GB16333-1996 GB16333-1996 GB16333-1996
20	parathion	식용유 채소 과일 피곡	0.1 검출금지 검출금지 0.1	GB5127-1998 GB5127-1998 GB5127-1998 GB5127-1998
21	carbendazim	곡류(피곡기준) 채소 과일	0.5 0.5 0.5	GB14870-94 GB14870-94 GB14870-94
No.	농약 명칭	농산물/식품	제한 잔류량(mg/kg)	표준번호
22	paclobutrazol	유채기름 피곡	0.5 0.5	GB16333-1996 GB16333-1996
23	diazinon	곡류(피곡기준) 채소 과일	0.1 0.5 0.5	GB14928.1-94 GB14928.1-94 GB14928.1-94
24	phosalone	면실유 엽채	0.1 1	GB16333-1996 GB16333-1996
25	cyfluthrin	면실유	0.05	GB16333-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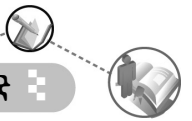
No.	농약 명칭	농산물/식품	제한 잔류량(mg/kg)	표준번호
26	flucythrinate	면실유	0.2	GB15194-94
		채소	0.2	GB15194-94
		과일	0.5	GB15194-94
		피곡	0.2	GB15194-94
27	procymidone	유채기름	1	GB16333-1996
		과일채소	2	GB16333-1996
28	methamidoophos	벼	0.1	GB14873-94
29	phorate	곡류(피곡기준)	0.02	GB4788-49
		식용유	검출금지	GB4788-49
		채소	검출금지	GB4788-49
		과일	검출금지	GB4788-49
30	parathion-methyl	벼	0.1	GB14874-94
		면실유	0.1	GB14874-94
31	piromiphose-methyl	곡물	5	GB14928.3-94
32	carbary	식량	5	GB14971-94
		식용유	0.5	GB14971-94
		채소	2	GB14971-94
		과일	2.5	GB14971-94
		담배	1	GB14971-94
33	metalaxyl	과일채소	0.05	GB16333-1996
		소립과일	1	GB16333-1996
		피곡	0.05	GB16333-1996
34	monocrotophos	벼	0.02	GB16333-1996
		면실유	0.05	GB16333-1996
No.	농약 명칭	농산물/식품	제한 잔류량(mg/kg)	표준번호
35	pirmicarb	식량(대두를 포함)	0.05	GB14928.2-94
		채소	1	GB14928.2-94
		과일	0.5	GB14928.2-94
36	carbofuran	벼	0.5	GB14928.7-94
37	captan	과일	15	GB15194-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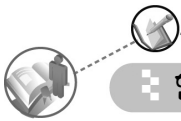
No.	농약 명칭	농산물/식품	제한 잔류량(mg/kg)	표준번호
38	cadusafos	사탕수수 감귤	0.005 0.005	GB15194-94 GB15194-94
39	quinalphos	쌀 감귤 채소	0.2 0.5 0.2	GB14928.10-94 GB14928.10-94 GB14928.10-94
40	dimethoate	식용유 채소 과일 피곡	검출금지 1 1 0.05	GB5127-1998 GB5127-1998 GB5127-1998 GB5127-1998
41	lindane	달걀 소젖, 유제품 고기, 지방 함량≤10% (FW로 계산) 고기, 지방 함량>10% (FW로 계산) 피곡	0.1 0.01 0.2 2 0.1	GB16333-1996 GB16333-1996 GB16333-1996 GB16333-1996 GB16333-1996
42	phosphamidon	피곡	0.1	GB15194-94
43	thiodicarb	면실유	0.1	GB16333-1996
44	HCH; BHC	식량(알곡으로 계산) 채소 과일 어류	0.3 0.2 0.2 2	GB2763-81 GB2763-81 GB2763-81 GB2763-81
No.	농약 명칭	농산물/식품	제한 잔류량 (mg/kg)	표준번호
45	cyhalothrin	면실유 배 등 과일채소 감귤 엽채	0.02 0.2 0.5 0.2 0.2	GB16333-1996 GB16333-1996 GB16333-1996 GB16333-1996 GB16333-1996
46	permethrin	곡류(피곡기준) 채소 과일	1 1 2	GB14871-94 GB14871-94 GB14871-94
47	malathion	알곡 식용유 채소 과일 피곡	3 검출금지 검출금지 검출금지 8	GB5128-1998 GB5128-1998 GB5128-1998 GB5128-1998 GB5128-1998



No.	농약 명칭	농산물/식품	제한 잔류량(mg/kg)	표준번호
48	bentazone	피곡	0.05	GB16333-1996
49	methomyl	양배추	2	GB16333-1996
		감귤	1	GB16333-1996
50	chlorbenzuron	채소	3	GB15195-94
		피곡	3	GB15195-94
51	fenvalerate	뿌리류 채소	0.05	GB14928.5-94
		곡류(피곡기준)	0.2	GB14928.5-94
		과일채소	0.2	GB14928.5-94
		과일	0.2	GB14928.5-94
		엽채	0.5	GB14928.5-94
52	propargite	감귤	5	GB16333-1996
		배 등	5	GB16333-1996
		면실유	0.1	GB16333-1996
		엽채	2	GB16333-1996
53	thiabendazole	감귤	10	GB16333-1996
		바나나	3	GB16333-1996
No.	농약 명칭	농산물/식품	제한 잔류량(mg/kg)	표준번호
54	hexythiazos	감귤	0.5	GB16333-1996
		배 등	0.5	GB16333-1996
55	buprofezin	식량	0.3	GB14970-94
		채소	0.3	GB14970-94
56	tricyclaxole	벼	2	GB14928.9-94
57	triadimenol	피곡	0.1	GB15194-94
58	triadimefon	곡류(피곡기준)	0.5	GB14972-94
		채소	0.2	GB14972-94
		과일	0.2	GB14972-94
59	azocyclotin	감귤	2	GB16333-1996
		배 등	2	GB16333-1996
60	thiocyclam	쌀	0.2	GB14928.11-94
61	disosultap	쌀	0.2	GB14928.12-94



No.	농약 명칭	농산물/식품	제한 잔류량(mg/kg)	표준번호
62	cartap	알곡 감귤	0.1 1	GB16333-1996 GB16333-1996
63	fenitrothion	곡류(피곡기준) 식용유 채소 과일	5 검출금지 0.5 0.5	GB4788-94 GB4788-94 GB4788-94 GB4788-94
64	methidathion	감귤	2	GB16333-1996
65	amitraz	감귤 과일채소 배 등 면실유	0.5 0.5 0.5 0.05	GB16333-1996 GB16333-1996 GB16333-1996 GB16333-1996
66	isocarbophos	벼 감귤(과육)	0.1 0.02	GB14928.8-94 GB14928.8-94
67	clofentezine	과일	1	GB15194-94
68	aldicarb	땅콩알 면실유 땅콩기름	0.05 검출금지 검출금지	GB14928.6-94 GB14928.6-94 GB14928.6-94
No.	농약 명칭	농산물/식품	제한 잔류량 (mg/kg)	표준번호
69	quintozene	채소 피곡	0.2 0.1	GB15194-94 GB15194-94
70	phoxim	곡류(피곡기준) 채소 과일	0.05 0.05 0.05	GB14868-94 GB14868-94 GB14868-94
71	methylebromide	피곡	50	GB15194-94
72	bromopropylate	감귤 배 등	5 5	GB16333-1996 GB16333-1996
73	deltametrin	감귤 과일채소(껍질 식용) 과일(껍질 식용) 피곡 엽채	0.05 0.2 0.1 0.5 0.5	GB14928.4-94 GB14928.4-94 GB14928.4-94 GB14928.4-94 GB14928.4-94



No.	농약 명칭	농산물/식품	제한 잔류량(mg/kg)	표준번호
74	phosmet	차잎	0.5	GB16320-1996
		채소	0.5	GB16320-1996
		과일	0.5	GB16320-1996
		피곡	0.5	GB16320-1996
75	ethion	면실유	0.5	GB15194-94
		피곡	0.2	GB15194-94
76	vinclozolin	채소	5	GB15194-94
77	acephate	곡류(피곡기준)	0.2	GB14872-94
		채소	0.2	GB15194-94
		과일	0.5	GB15194-94
78	iprodione	배 등	10	GB16333-1996
		과일채소	5	GB16333-1996
79	atrazine	사탕수수	0.05	GB16333-1996
		옥수수	0.05	GB16333-1996

가축 잔류물질 제한표준

- 중국이 제정한 가축 잔류물질 표준에서 규정한 가축약 종류는 주로 중국에서 등록된 가축약이며, 해외에서 생산된 가축약이 표준에 등록된 것은 매우 적음. 현재 중국에서 사용되는 가축약 종류는 3,000여 가지이며 그 중 96가지 품목에 대해 550가지의 가축약 최고 잔류량 표준을 제정했으며 이는 소, 양, 돼지, 닭 등 17가지 동물과 11가지 동물부위에 적용

—중국 농업부는 2002년 12월 24일에 농업부 제 235호 공고로 “동물성 식품 중 농약 최대 잔류량 제한” 표준을 발표

■ 식품 중 방사성 물질 최대 잔류량 제한표준

■ 식품 부류별 방사성 동위원소의 제한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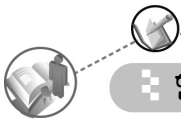
품종	Sr-89 (Bq/kg)	Sr-90 (Bq/kg)	iodin-131 (Bq/kg)	Cs-137 (Bq/kg)	Ra-226 (Bq/kg)	천연 토륨 (Bq/kg)	천연 우라늄 (Bq/kg)
음용수, 음료	111	2.6	22.2	37	1.1	0.1	0.05
식량, 서류, 채소	259	7.4	37	74	2.6	0.2	0.1
과일, 두류, 설탕	370	11.1	111	148	37	0.4	0.2
우유류	370	11.1	14.8	148	3.7	0.4	0.2
육류, 계란, 수산물, 식용유	1,110	2.2	185	333	11	0.9	0.4
소금	1,480	33.3	296	370	14.8	1.3	0.6
차잎(건조)	1,480	333	296	370	14.8	1.3	0.6
해조류(건조)	2,590	74	370	740	26	2.2	1.1

■ 수산물 내 잔류물질 제한표준

- 중국 농업부는 2002년 7월 25일 “수산물 잔류물질 제한량” (NY50702002)을 발표 했다.

■ 수산물 내 잔류물질 제한표준

No.	약물명칭	최고 잔류량 제한치(ug/kg)
1	chlortetracycline	100
2	oxytetracycline	100
3	tetracycline	100
4	chloramphenicol	검사할 수 없음
5	sulfadiazine	100 (전체 중량으로 계산)
6	sulfamerazine	
7	sulfadimidine	
8	sulfamethoxazole	
9	trimethoprim	50
10	oxilinic acid	300
11	furazolidone	검사할 수 없음
12	diethylstilbestrol	검사할 수 없음
13	olaquinox	검사할 수 없음



■ 주요 품목 관세율

품목명	HS코드	관세	증치세	비 고
유자차	20079100	30	17	삶은 과일잼, 과일젤리, 감귤잼, 설탕 혹은 기타 감미제를 첨가한 제품 포함의 감귤 속 과일
	20083010 20083090	20	17	기타 방법으로 제조 혹은 저장한 기타세목에 없는 과일, 견과 및 식물의 기타식용부분, 술, 설탕 혹은 기타 감미제를 첨가한 제품 포함의 감귤 속 과일
	21069090	20	17	기타 코드가 없는 식품
전통주 (복분자주, 백세주)	22060000	44.5	17	기타 발효음료(사과주, 배주 등); 기타세목에 없는 발효음료의 혼합물 및 발효음료와 무알콜음료의 혼합물
장류	21069090	20	17	기타 코드가 없는 식품
조미김	20089931	15	17	조미김('08년 신설)
홍삼	12112099	20	13	인삼의 기타

※ 유자차의 경우 20079100이 가장 적합하나 관세가 높고 ‘차’와 ‘잼’에 대한 표기 문제에 대해 세관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 바이어에 따라 유사한 제품군이나 기타 코드가 없는 식품으로 신고하고 있음

붙임 1

농업부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공고
제32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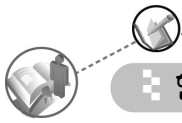
2003년 12월 17일 한국농림부는 OIE에 충청북도 음성지역의 양계장에서 H5N1이 발생하였다고 보고함, 따라서 <중화인민공화국진출경동식물검역법>의 관련규정에 근거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한국으로부터 가금, 조류 및 제품의 수입을 금지한다. 이미 중국의 세관에 도착한 가금, 조류 및 제품은 반송 혹은 소각 처리한다.
2. 우편 혹은 휴대로 한국으로부터 가금, 조류 및 제품의 수입을 금지한다. 발견 시 반송 혹은 소각 처리한다.
3. 중국을 경유하거나 중국경내에 머무는 국제항행 선박, 비행기, 기타 등 교통기구에서 한국으로부터 온 가금, 조류 및 제품이 발견되면 즉시 봉인 처리하고 관련인원들이 사육 혹은 사용하는 가금, 조류는 조롱에 넣어 뒤야하며 폐기물은 출입경검사검역기구의 감독 하에 무해처리를 해야 한다.
4. 세관 및 변경부문에서 발견된 한국으로부터 밀수입한 가금, 조류 및 제품은 출입경검사검역기구의 감독 하에 소각 처리한다.
5. 상기규정을 위반한자는 출입경검사검역기구에서 <중화인민공화국진출경동식물검역법>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6. 각 출입경검사검역기구와 동물방역감독기구는 <중화인민공화국진출경동식물검역법>과 <중화인민공화국동물방역법>의 관련규정에 근거 밀접히 배합하여 검사, 검역, 감독 사업을 진행한다.
7. 본공고는 발표일부터 집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부

중화인민공화국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2003년 12월 22일



붙임 2

보건식품 원료관리에 관한 규범 통지(2002) 51호

“보건식품 원료관리에 관한 발전된 규범을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식품위생법에 근거, “식품 또는 약품으로 사용가능한 품목 리스트”, “보건식품으로 사용가능한 품목 리스트”, “보건식품 사용불가 품목리스트”를 공포한다. 이하 생략

참조 : <http://www.shfda.gov.cn/cmsweb/webportal/W89/A1548.html>

1. 식품 또는 약품으로 사용 가능한 품목 List

丁香、八角茴香、刀豆、小茴香、小薊、山藥、山楂、馬齒莧、烏梢蛇、烏梅、木瓜、火麻仁、代代花、玉竹、甘草、白芷、白果、白扁豆、白扁豆花、龍眼肉(桂圓)、決明子、百合、肉豆蔻、肉桂、余甘子、佛手、杏仁(甜、苦)、沙棘、牡蠣、芡實、花椒、赤小豆、阿膠、鷄內金、麥芽、昆布、棗(大棗、酸棗、黑棗)、羅漢果、郁李仁、金銀花、青果、魚腥草、姜(生姜、干姜)、梔子、砂仁、胖大海、茯苓、香櫞、香薷、桃仁、桑叶、桑椹、桔紅、桔梗、益智仁、荷叶、萊菔子、蓮子、高良姜、淡竹叶、淡豆豉、菊花、菊苣、黃芥子、黃精、紫蘇、紫蘇籽、葛根、黑芝麻、黑胡椒、槐米、槐花、蒲公英、蜂蜜、榧子、酸棗仁、鮮白茅根、鮮芦根、蝮蛇、橘皮、薄荷、薏苡仁、薤白、覆盆子、藿香。

2. 보건식품으로 사용 가능한 품목 List

人參、人參叶、人參果、三七、土茯苓、大薊、女貞子、山茶萸、川牛膝、川貝母、川芎、馬鹿胎、馬鹿茸、馬鹿骨、丹參、五加皮、五味子、升麻、天門冬、天麻、太子參、巴戟天、木香、木賊、牛蒡子、牛蒡根、車前子、車前草、北沙參、平貝母、玄參、生地黃、生何首烏、白及、白術、白芍、白豆蔻、石決明、石斛(需提供可使用證明)、地骨皮、當歸、竹茹、紅花、紅景天、西洋參、吳茱萸、懷牛膝、杜仲、杜仲叶、沙苑子、牡丹皮、芦薈、蒼術、補骨脂、訶子、赤芍、遠志、麥門冬、龜甲、佩蘭、側柏叶、制大黃、制何首烏、刺五加、刺玫果、澤蘭、澤瀉、玫瑰花、玫瑰茄、知母、羅布麻、苦丁茶、金蕎麥、金櫻子、青皮、厚朴、厚朴花、姜黃、枳殼、枳實、柏子仁、珍珠、絞股藍、胡芦巴、茜草、蕁麥、韭菜子、首烏藤、香附、骨碎補、党參、桑白皮、桑枝、浙貝母、益母草、積雪草、淫羊藿、菟絲子、野菊花、銀杏叶、黃芪、湖北貝母、番瀉叶、蛤蚧、越橘、槐實、蒲黃、蒺藜、蜂膠、酸角、墨旱蓮、熟大黃、熟地黃、鼈甲。

3. 보건식품으로 사용금지된 품목 List

八角蓮、八里麻、千金子、土青木香、山萇蓉、川烏、广防己、馬桑叶、馬錢子、六角蓮、天仙子、巴豆、水銀、長春花、甘遂、生天南星、生半夏、生白附子、生狼毒、白降丹、石蒜、關木通、農吉痢、夾竹桃、朱砂、米穀(罌粟殼)、紅升丹、紅豆杉、紅茴香、紅粉、羊角拗、羊躑躅、麗江山慈姑、京大戟、昆明山海棠、河豚、鬧羊花、青娘虫、魚藤、洋地黄、洋金花、牽牛子、砒石(白砒、紅砒、砒霜)、草烏、香加皮(杠柳皮)、駱駝蓬、鬼白、莽草、鐵棒槌、鈴蘭、雪上一枝蒿、黃花夾竹桃、斑蝥、硫磺、雄黃、雷公藤、顛茄、藜芦、蟾酥。

